

# 부산직할시사하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 과세에관한조례제정이유서

의안번호	150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2. 11. 3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 1. 제 정 이 유

이 조례는 공업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공업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하여 종전의 증과세 하던 것을 일반과세하여 줌으로써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음

## 2. 주 요 골 자

- 대도시내 신·증설 공장에 대한 증과세 세율인 15/1000를 일반과세 세율인 3/1000으로 적용
- 적용세목 : 재산세

## 3. 관 계 법 령

- 지방세법 제7조 1항
- 내무부 준칙